

「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지연 의원 외 5인

2. 찬 성 자 : 김근한 의원 외 6인

3. 제안이유

- 예산편성 등 예산의 전 과정에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를 명문화하여 제도 운영의 균형성을 확보하고, 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 참여 보장, 시장 책무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5조)
-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, 주민 의견수렴 방법 및 의견 제출,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제9조)

-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~제19조)
-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 및 주민참여예산학교에 운영에 관한 사항
(안 제20조~21조)
- 포상에 관한 사항 (안 제23조)

5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지방재정법」 제39조
 -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46조

6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구미시민이 예산의 편성·집행·결산과 관련된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시 재정의 건전화 및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「지방재정법」 제3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·운영, 예산과정에서의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

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, 본 개정안의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위원 다양화, 포상 조항 신설 등은 법 저촉사항 등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, 주민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
- 집행기관은 조례 개정의 취지에 맞게 주민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참여기회를 보다 확대하고, 예산과정에 주민참여 절차를 통한 시민의 의견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여야 할 것임.
- 특히, 주민참여예산위원 위촉 시 대표성·전문성 확보 및 다양한 계층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참여예산제가 형식적인 제도 운영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.

※ 별표 - 참고자료

○ 2025년 구미시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

(단위 : 건, 백만원)

주민참여 예산사업 반영규모 (합계)		주민제안사업						일반참여 예산사업	
		공모제안 사업		공모 외 제안사업		읍·면·동 자치계획사업			
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
41	1,080	-	-	8	751	33	329	-	-